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41
------------	-----

제출일자 : 2013. 10.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13.1.1.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현행 징수포상금 조례를 대신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보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을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자료 제공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재 시 직제 순에 따라 직무
대행 규정 신설(안 제7조)
- 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1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9. 11. ~ 10. 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체납액 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수행한 체납액 징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④ 군수는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원 등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

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군이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탈루세액 등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체납자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토지정보과장,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	--	------	--	------	--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보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전화번호 : <input type="radio"/> 주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상호 :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주소 : <input type="radio"/>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p>※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p>						
년 월 일 신고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좌신고	금 용 기 관			
	계좌번호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 (인)</p> <p>귀하</p>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고 내용 요약			
통지 받은 징수액	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좌 신고	금 용 기 관			
	계좌 번 호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첨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년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 방 세 징 수 예 특 별 한 공 적 등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 루 세 액 등 제 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벼 려 지 거 나 술 은 세 원 발 굴					
지난년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 방 세 징 수 예 특 별 한 공 적 등					

(별지 제7호 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성 명	주민 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민 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신고자		징수내역				체납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확인
성명	주민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주민 번호				

(별지 제9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 (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직 급	성명 (주민 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민 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 민 번 호				

※ “구분”란에는 지난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별지 제11호 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체납자		징수촉탁 수 수 료		지급 일자	포상 금 지급 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 액	징수 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 액			

-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2.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는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참고 2 비용주계서 미첨부 사유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년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0	13,500	13,50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800	10,080	10,080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	7,200	7,200	7,200
자동차세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0	1,008	1,008

○ 본 개정안은 현행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정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세출의 순증가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세무과 이성한

참고 3

개정관련 공문

첨부3.0. 국민과의 약속



대구광역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결과 통보

1.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구·군에서도 조속히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공보 제909호(2013. 7.10) 참고

2. 아울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기준·방법·한도 등을 명확히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 후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 2013-7-10).
끌.

대구광역시장

수신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2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징수팀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징수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전결 2013. 7. 10

주무관 전병도 세정담당 정경영 세정담당관 조현철

협조자

시행 세정담당관-8639 (2013.08.14) 접수 세무과-10728 (2013.07.10.)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http://www.daegu.go.kr>
전화 053-803-2504 전송 803-2499 / jubydo@korea.kr / 공개

세계 에너지 올림픽『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 10.11~18